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아동수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01 주요 내용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논의 하는 간담회를 개최(9.23)
 - 저출산의 핵심대책인 보육비 및 가정양육수당을 13조 원 지출하였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논의 중

논의 주체	주요 내용	재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 0~15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6세 아동에게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부가제공	· 27조원 7710억원(GDP의 약 1.7% 수준) 소요 · 기존 보육예산 13조+목적세 신설
더불어민주당	· 만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2세까지 10만원, 5세까지 20만원, 12세까지 30만원)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 · 대상가구는 93.21%로 제한, 다만 셋째 아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 15조 소요 예상 ·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신설(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등

- 아동수당이 운영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기구의 빈곤 등 생활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현황〉

국가	대상	급여	재원
스웨덴	만16세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기본으로 한부모, 저소득, 장애아동, 입양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자녀 한 명당 최소 1,050크로나(약 13.5만원)/월, 최대 40,000크로나(약512.7만원)(일시금) 지급	정부전액부담 ※ 부양비 보조를 위한 비용은 부양책임이 있는 부모의 상환으로 일부 총당됨
프랑스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임신부, 입양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가족수당은 두자녀부터 지급 자녀 한 명당 최소 64,67유로(8만원)/월, 최대 1,846.15유로(228만원)(일시금) 지급	자영업자: 소득의 5.4% 고용주: 임금 총액의 5.4% 정부: 개인소득에 사회 기여금을 부과하여 기금 형성
영국	만 16세 미만의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원	첫째 자녀에게 20.50파운드(약 3만원)/주 지급, 둘째 자녀부터 일인당 13.55파운드(약 2만원)/주 추가지급*	정부전액부담
일본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면 가족수당 지원	자녀 한 명당 최소 5,000엔(약 5.5만원)/월, 최대 15,000엔(약 16만원)/월 지급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업주, 정부, 도도부현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름**

자료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므로 도입의 목적(출산율 제고 vs 아동의 잘 자랄 권리 보장),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 양육비용부담(만21세까지 자녀 1명당 양육비용은 약 3억1천만원/보건사회연구원)은 상대적이므로 일정금액의 수당 제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 필요

*0-3세 자녀를 둔 근로자: 사업주부담 47%(임금의 약 0.15%), 재무성 36%, 도도부현 9%, 지자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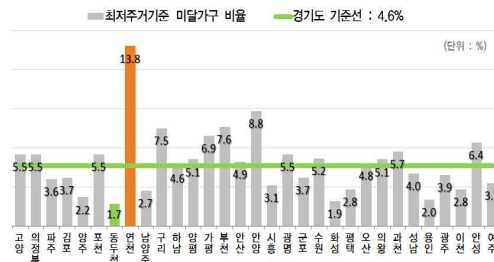
**3세~15세 자녀를 둔 근로자, 자영업자, 비고용자: 재무성 67%, 도도부현 17%, 지자체 17%

2. 경기도 주거비 부담, 전국 최고 수준

01 주요 내용

- 지난 해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가 복지급여 한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지닌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물리적인 환경 외에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인 부담 정도를 통해 보장 가능
- 경기복지재단(2016) 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6%로 전국(5.4%, 2014년 주거실태조사)이나 수도권 평균(4.7%, 2014년 주거실태조사)보다 양호
 - 다만 시군별로 연천군이 13.8%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1.7%로 약 8배의 차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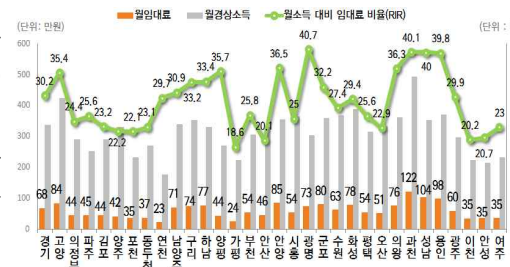


* 경기복지재단 (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주거기본법 제 17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면적, 방수기준 중 1개의 기준이라도 미달할 경우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RIR(Rent to Income Ratio,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 값은 30.2%로 전국(24.2%, 2014년 주거실태조사)은 물론 서울(25.5%, 2012년 주거실태조사)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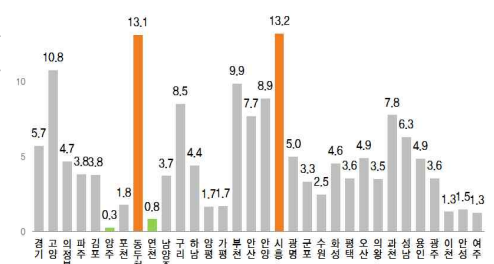
〈경기도 31개 시군의 임차료 비중〉



- 경기도 임차가구의 월임대료는 평균 68.4만원으로 과천시(121.7만원)와 연천군(22.5만원)간 5.4배의 차이 발생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광명(40.7%), 과천(40.1%), 성남(4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평이 18.6%로 가장 낮음

-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이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자발적 이주경험〉



-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1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두천시(13.1%), 고양시(10.8%) 순으로 나타났고, 양주시가 0.3%로 가장 낮음

- 주거권은 기본권인 만큼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 특히, 시군 간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 필요

02 시사점

- 경기도민은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공급 전략 수립 및 실행
 - 수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높일 수 있는 자가가구에게 현실적인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 부담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따복주거비' 추진으로 주거생활안정 유도
 - 현재 중위소득 43%까지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주거비부담이 높은 지역의 저소득 임차가구(예, 중위소득 50%)까지 경기도-시군 매칭 주거비보조사업 '따복주거비' 제도 운영

02 사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올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기초자료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주택개량사업 규모 및 관련 예산 규모를 비교

-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현재 주거비 보조와 주택개량자금 지원으로 구분되어 실시 중임
 - 임차 수급가구에는 주거비를 보조하고 자가 수급가구에는 노후주택을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가 지급
- 경기도 31개 시군별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도농복합 지역에서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택개량 수급자가 많은 파주·포천·연천·양평·평택·안성·여주 등은 시에서 지출하는 총 금액은 높은 반면 1가구당 평균지급액은 67만원에서 80만원으로 타 시도보다 낮음
 - 반면 남양주시는 총액은 적는데, 가구 수가 적다 보니 1가구당 지원액이 121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처: 경기도 내부 통계자료

〈표 1〉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 수급자 및 예산 규모

지역	수급가구 수	평균수급액	총 예산액	지역	수급가구 수	평균수급액	총 예산액
고양	21	50.1	6,310	시흥	20	56.2	6,748
의정부	13	76.4	5,960	광명	4	52.3	1,255
파주	49	68.1	20,034	군포	2	54.5	654
김포	18	64.4	6,950	수원	27	58.2	9,435
양주	24	67.9	9,775	화성	25	65.5	9,828
포천	55	65.2	21,501	평택	49	58.3	17,136
동두천	24	60.6	8,731	오산	5	73.6	2,208
연천	46	71.9	19,851	의왕	1	52.5	315
남양주	12	121.3	8,736	과천	0	0	0
구리	4	72.7	1,744	성남	6	46.7	1,681
하남	0	0	0	용인	16	58.2	5,587
양평	48	80.5	23,198	광주	11	69.3	4,574
가평	29	79.2	13,783	이천	33	66.4	13,149
부천	36	53.1	11,479	안성	56	71.0	23,869
안산	24	49.0	7,050	여주	45	67.0	18,078
안양	11	67.0	4,423				

*단위: 가구, 만원

- 다양한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량지원금을 실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
 - 현재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외에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저소득층집수리사업(안전행정부), 슬레이트철거사업(환경부) 등 다양하게 존재
 - 지방정부 중심으로 실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통합적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

2.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0. 5.(수) 14:00 •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 내 용 :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노인잔치 한마당 • 대 상 : 경기도 내 노인 단체 및 노인 등

03 FACT CHECK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 최근 아동수당이 2017년 대선 쟁점으로 떠올라 찬반양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대여론에 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
 - 지난 23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가 아동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에 이어 28 일에는 박광온 의원(더민주·수원정)이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세’를 대표발의
- 최저 출산율을 연속 기록 중인 인구절벽 시대에 아동수당 이슈가 점화되면서 아동수당이 가지는 정책적 효과를 출산율 반등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시도가 진행
 - 이 경우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하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수당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
- 우리나라 가족정책 예산은 약 20.5조로 지난 '06년(2.1조)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나, 대부분 보육예산에 해당하고 아동 지원은 미흡했기 때문에 수당도입 주장은 이전부터 존재
 - 특히 성인의 탈빈곤/고용 정책 효과가 아동에 대한 투자 효과보다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연구결과***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주장의 근거로 작용
- 출산율 제고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전체 가족정책이 통합적으로 강화될 때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보다는 아동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아동수당의 부차적 효과는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임
- 따라서 향후 아동수당 찬반논의의 초점은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아동이라는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하며 부차적인 효과로서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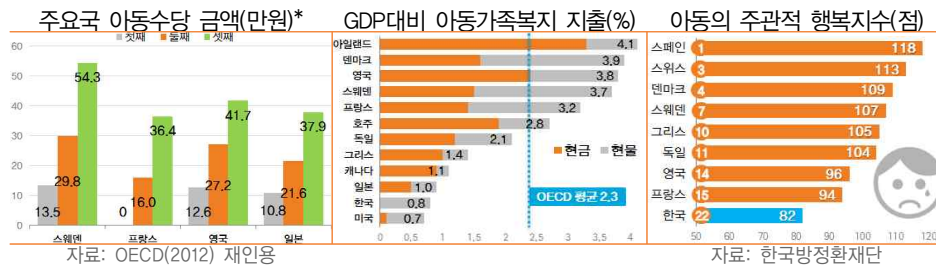
*"아동수당이 출산율 높여줄까"(파이낸셜뉴스 9.28), "수십조 원 아동수당, 다 좋은데 무슨 돈으로 힐 간장(조선일보 9.27) 등

**Laroque and Salanie, 2003

***고경환 외, 2008; Cunha et al., 2005; Heckman and Lochner, 2000

04 통계로 보는 복지

OECD 주요국 아동복지 수준



*9.29. 환율기준

- 주요국의 아동수당 금액은 스웨덴의 아동수당이 첫째 13.5만원, 둘째 29.8만원, 셋째 54.3만원(월 기준)으로 가장 높고, 네 나라 모두 자녀 수 별로 차등지원
- OECD 주요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아일랜드(4.1%)·덴마크(3.9%) 등 북유럽권이 높고 미국(0.7%)과 한국(0.8%)·일본(1.0%) 등 자유주의국가는 낮음
 - 한국은 미국·일본·캐나다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지만 급여의 성격에서는 캐나다·일본이 현금급여 중심인데 비해 한국·미국은 바우처 등 현물급여 중심
- 올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22위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아동의 행복과 권리 진작을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셋째자녀 기준